이사회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4 조(자문) 독립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 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로 한다.

②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은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일(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 10 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기타 자본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기타 회사조직과 운영의 근본적인 변경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0)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의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또는 부여

(12) 이사.감사위원의 보수 한도

(13) 회사의 계열회사, 임원,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9 소정의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14) 법정준비금의 감액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6)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8) 상장 폐지 및 상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사업(해당 사업부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2) 연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개별 회사 기준)상의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제 3 자에 대한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3) 연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개별 회사 기준)상의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제 3 자에 대한 자금 대여,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을 포함한 신용공여(과거 영업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의 상거래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외)

(4) 건당 100 억원 초과 또는 연간 누계 300 억원 초과 신규 금융기관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한도대출의 신규설정은 포함하되 한도대출 내에서 대출금액의 증감은 제외)

(5)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7) 결손의 처분

(8) 신주의 발행

(9)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전환사채의 발행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3)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이사의 경업 거래, 동종영업 목적의 타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겸임에 대한 승인

(3) 중요한 소송의 제기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이 인정한 사항
3.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감사위원의 출석)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1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8)

이 규정은 2018 년 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7)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0)

이 규정은 2018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03)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01)

이 규정은 202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3 조의 3, 제 4 조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최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1)-2 목 내지 (1)-3 목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2012. 02. 14 작성 2018. 02. 08 개정 2018.03.07 개정 2018.12.10 개정
2020.03.03 개정 2023.06.01 개정 2026.03.26 개정